



코이방지시설의 인산탱크 용량 증대

사업 개요

주조공장의 CORE공정에 설치된 방지시설 (탈취용 SCRUBBER)을 설치, 운전중에 있으나 약취 제거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인산 투입농도를 높임에 따라 약품저장탱크의 용량이 부적해 저장용량을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방지시설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문 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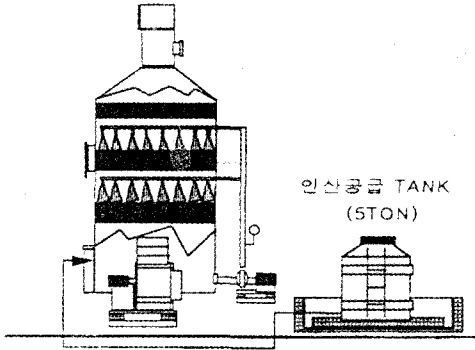
기존 인산저장 탱크 용량이 5톤으로 1회/3일 충진으로 설계되었으나 약취 최종배출농도를 1/10로 감소시키고자 인산투입농도를 2배로 증가시킴에 따라 기존 약품저장 탱크용량이 적어 방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 발생 우려가 있음.

적용 기술 또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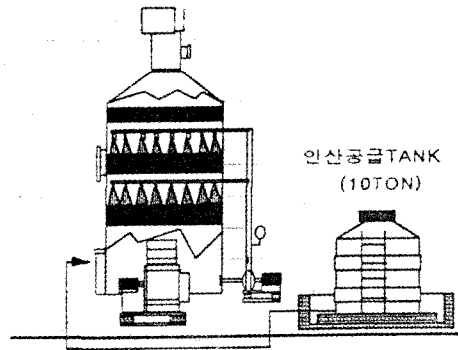
기존 인산저장 탱크 용량을 5에서 10톤으로 증가시켜 재고 용량을 확보하고 약품 충진 주기를 연장하여 안정적 방지시설 운전조건을 조성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고자 함.

개 선 내 용

개 선 전



개 선 후



개 선 효과

- 약취물질의 지속적/안정적인 처리효율 확보 (기존 배출농도의 1/10이하 관리)
- 약품 재충진 주기의 연장
- 방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

세부추진실적

| 사 추 진 단 계 | 업 계 | 시행시기 | 투자금액 (천원) |
|-----------------------|--------|----------------|--------------|
| 기 | 획 | 1999.12 | 25,000 |
| 설 | 계 | 1999.12 | |
| 공 | 사 | 2000.03 | |
| 시 | 운 | 2000.04 | |
| 정 | 상 | 2000.05 | |
| 계 | | '99.12~2000.05 | |



환경시설 최적관리로 배출오염물질 저감

사업개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조건, 유지상태, 작업형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처리효율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최적조건의 상태를 유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고자 함.

문제점

적용기술 또는 방법

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오염물질의 양과 방지시설의 처리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항상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작업상태 및 운전조건의 표준화가 필요함.

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오염물질의 양과 방지시설의 처리 효율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운전조건을 최적상태로 유지관리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최소화와 방지시설 효율 극대화를 꾀함.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오염물질의 대량 배출공정 및 유독성 오염물질의 배출공정 등에 대하여 작업방식에 따른 기술표준에 의해 운전함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최적운전조건등과 연계되지 못해 최적운전조건을 맞추는데 어려움 있음. 활성탄 흡착시설의 흡착제 교체주기 준수 및 세정집진시설의 세정수 교체주기 준수, 여과 집진시설의 여과포 마모상태 확인 점검, 자가 측정등을 통한 방지시설의 효율측정을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저감활동이 만족 수준 아님.

오염물질 배출공정의 운전조건을 최소오염 물질 배출조건으로 설정하고, 방지시설의 운전 조건도 최적효율로 운전할 수 있게 조건설정. 활성탄 흡착시설의 흡착제 교체주기 준수 및 세정 집진시설의 세정수 교체주기 준수, 여과 집진시설의 여과포 마모상태 확인 점검, 자가측정 등을 통한 방지시설의 효율측정을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저감활동 활성화.

개선효과

세부추진실적

| 사 추 진 단 계 | 업 계 | 시행시기 | 투자금액 (천원) |
|-----------------------|--------|--------------|--------------|
| 기 | 획 | 2000.01 | 230,450 |
| 설 | 계 | 2000.01 | |
| 공 | 사 | 2000.01 | |
| 시 | 운 | 2000.12 | |
| 정 | 상 | 2000.12 | |
| 계 | 동 | 0.01~2000.12 |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조건 기술표준 수정
- 활성탄흡착시설 및 세정집진시설의 여재 및 세정수 교체주기 준수 및 단축
- 폐수처리장, 집진설비 확인 점검 활성화
- 오염물질 자가측정(법적횟수제외)활성화



인산폐수 배관변경으로 안정적 처리

| 사 업 개 요 | | | | |
|--|--|---|----------------|-----------|
| 인산폐수의 이송배관 변경으로 총인 오염도를 저감시킴 | | | | |
| 문 제 점 | | 적 용 기 술 또는 방 법 | | |
| · 소재 코아라인 스크러머에서 발생하는 인산 폐수의 총인 오염도가 높아 자체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함 | | · 인산폐수 이송배관을 변경하여 총인 오염도를 낮춤 | | |
| 개 선 내 용 | | | | |
| 개 선 전 | | 개 선 후 | | |
| · 인산폐수의 총인 오염도가 968mg/ℓ 로 종합폐수 처리장 직접 유입시 방류수의 총인 오염도가 사내 관리기준인 8mg/ℓ 를 초과 배출됨 | | · 인산폐수가 폐액처리장에 유입되도록 배관변경 · 폐액처리장에서 1차 처리후 종합폐수 처리장 이송처리하여 총인 오염도가 사내 관리기준 이 내로 운영됨.(5mg/ℓ) | | |
| 개 선 효 과 | | 세부추진실적 | | |
| | | 사 추 진 단 계 | 시행시기 | 투자금액 (천원) |
| · 총인 오염도 저감 : 37mg/ℓ → 5mg/ℓ | | 기 획 | 1999.10 | 7,000 |
| | | 설 계 | 1999.12 | |
| | | 공 사 시 행 | 2000.01 | |
| | | 시 운 전 | 2000.02 | |
| | | 정 상 가 동 | 2000.02 | |
| | | 계 | '99.10~2000.02 | |



우수로에 우수분리기 설치로 OIL 유출방지

| 사업 개요 | | | |
|---|--|---------|--------------|
| 버스/트럭공장 주변 도로에 소량씩 누출된 OIL을 우수분리기를 설치하여 제거함으로써 하천오염 예방. | | | |
| 문제점 | 적용기술 또는 방법 | | |
| · 버스/트럭공장 주변도로에 소량씩 누출된 OIL이 우천시 우수와 함께 우수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어 하천오염이 우려됨. | · 우수로에 격막식 우수분리기 설치. (버스동, 트럭동 2개소) | | |
| 개선내용 | | | |
| 개선 전 | 개선 후 | | |
| | | | |
| 개선 효과 | 세부추진실적 | | |
| · 우천시 OIL 하천유출 방지. · 비상사태시 수질오염 물질 하천 수계 배출 방지. | 사추진단계 | 시행시기 | 투자금액 (천원) |
| | 기획 | 2000.03 | 16,000 |
| | 설계 | 2000.03 | |
| | 공사시행 | 2000.04 | |
| | 시운전 | 2000.05 | |
| | 정상가동 | 2000.05 | |
| 계 | '00.03 ~ 2000.05 | | |

환경관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연합회는 국가의 환경관리가 청렴하고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공무원 및 환경관련업체의 부조리, 배출시설의 부적절한 환경관리에 대한 『환경관리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및 소속기관과 지자체 등 환경관련 공무원과 산하단체 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또는 애로사항, 환경관련업체의 횡포, 배출시설업체의 불법 환경관리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창구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곳에는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신고 대상]

- 허가·등록·협의·신고 등 민원서류 처리시 불필요한 서류의 과다 요구, 법정처리 기간초과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지도·점검시 금품·향홍 등 사례를 요구받거나 사례한 경우
- 납품·계약·기금유자 등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부정·비리행위
-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등 압력,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행위
- 민원접수거부 등 무사안일, 근무태만, 직무유기, 불친절한 행위 등.
- 환경관련업체의 부실 시공, 불량 환경 제품 유통, 폐기물 불법처리, A/S 부조리
- 배출시설업체의 부적합한 환경관리, 사업주의 횡포에 관한 사항 등

신고하실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연락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기 바라며, 익명 또는 허위주소일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된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공동감사를 거쳐 연합회 홈페이지 및 월간 '환경관리인'에 공개하고 해당 부서, 해당 업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신고센터 : kemf@kemf.or.kr

환경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 창출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02)852-2291